

I. 종묘사업 실시요령

제정 1969. 1. 16. 예규 제 21호
 전문개정 1998. 7. 22. 예규 제477호
 개정 1999. 12. 30. 예규 제491호
 전문개정 2004. 8. 12. 예규 제50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용 종·묘사업(산림용 종자와 묘목으로 접·삽수,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내지 제52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채종임분”이라 함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 “채종림”이라 함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 “채종원”이라 함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1세대 채종원을 말한다.
- “수형목”이라 함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 “채수포”라 함은 우량한 접·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일명 클론보존원)을 말한다.
- “클론”(clone)이라 함은 접·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번식된 단일 개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 “종자산지구역”이라 함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제 2 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제4조(채종림·수형목의 관리) ①산림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도산림환경연구소장·산림개발연구원장·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산림환경연구소장”이라 한다)과 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 현재의 채종림·수형목지정현황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종림·수형목의 지정과 해제기준)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림내 채종림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단지의 면적이 1헥타 이상이고 모수가 1헥타당 150본 이상인 산림
2.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3.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4.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5. 임분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6.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7.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8.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제1호 내지 제7호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림내 채종림의 해제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용·공공용사업 수행으로 채종림으로서의 존치가 불가능할 때
2. 산불, 병충해, 기상피해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거나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서 피해 및 노쇠 모수가 현존 본수의 50% 이상일 때
3.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동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4. 기타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③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림내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림내 수형목의 해제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2. 산불, 병충해, 기상피해 등 산림피해를 입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3.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림내 채종임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수간의 단면이 원에 가까운 것

2.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되며 활엽수의 경우는 분지성이 적은 것

3. 노쇠목이나 기형목이 아닌 것

4. 병충해 피해가 없고 채종작업이 용이한 곳

⑥채종림·수형목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최소면적을 해제한다.

제6조(채종원·채수포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산림시책상 필요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현재의 채종원·채수포조성실적보고를 다음년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림용 종자관리

제7조(종자결실 예찰조사) ①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경유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자채취) ①채종림·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산림환경연구소장·국유림관리소장이 직접 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경유(국립산림과학원장이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채종림·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채취할 경우 종자채취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종자채취자를 지정하여 산림환경연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지도·감독하에 종자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③종·묘생산에 필요한 접순·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채취 사용할 수 있다.

④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채취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3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조성 지역·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종자의 검사 및 품질보증표)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유림관리소장 채취종자, 산림환경연구소가 없는 시 · 도 채취 종자 및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저장 종자
 2. 산림환경연구소장 : 산림환경연구소장 직영 채취 종자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에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는 임업용종자감정요령에 따라 검사하며 합격종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검사기관에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보증표를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품질보증표의 색깔은 채종임분 종자는 황색, 채종립 종자는 녹색, 미검정 채종원 종자는 분홍색, 검정 채종원 종자는 청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종자산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채종립 · 채종임분 또는 채종원 이외에서 채취한 종자는 품질기준 이상이라도 합격종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불합격 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묘목의 대행생산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학술목적 · 국제교류상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 4 장 산림용 양묘사업 · 묘목검사 등

제10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묘목의 생산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 · 묘 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②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양묘사업상황보고는 5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양묘실태조사보고는 10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묘사업기준일람표 및 양묘사업공정일람표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1조(묘목검사 등) ①지방산림관리청장, 시장 · 군수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정묘목에 대한 검사는 묘목을 지정한 당해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조림용 묘목검사 통보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③묘목생산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별 · 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④산림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묘목의 품질기준과 규격 등은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한 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⑤조림용 묘목규격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장 : 균원경에서 정아까지의 길이
2. 균원경 : 포지에서 묘목줄기가 지표면에 닿았던 부분의 최소 직경
3. 근장 : 균원부에서 주근·측근 중 주된 뿌리부분의 말단까지의 길이

제12조(묘목검사 방법) ①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 또는 선묘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달관적으로 조사하여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산림용 묘목검사야 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하여 시료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
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근원경·근장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상해묘 및 형질불량묘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와 시료 실제 본수와의 비율을 실측하여 합격묘 비율이 95%이상 되어야 한다. 이때 병해묘 여부는 조직검사에 의해 판정토록 할 수 있다.

③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묘목포장 등) ①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 외부에 부착하는 품질보증표와 품질보증표의 색깔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품질보증표에는 검사자의 확인인을 찍어야 한다.

제14조(묘목의 수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목은 검사원의 묘목검사를 받은 후에 수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용 묘목
2.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용 묘목

제15조(재선별 지시 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달관조사 결과 또는 동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표가 5%를 초과할 때에는 그 모집단의 묘목 전량을 불합격표로 판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묘목재검사서를 불합격 받은 묘목생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일까지 수검준비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버섯종균의 품종등록 등

제16조(품종등록의 예정공고 및 공고에 포함될 사항) 규칙 제39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공고 : 버섯의 종류, 신청년월일,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품종의 특성 개요, 신청품종의 육성결과 개요, 공고기간, 이의신청 절차
2. 품종등록 공고 : 버섯의 종류, 품종의 명칭, 품종등록권자, 품종등록일자, 품종등록 유효기간, 등록품종의 특성, 법 제45조제3항과 관련된 유의사항

제17조(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하여 등록한 품종의 종균분양) 법 제4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한 품종의 분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신품종 등록 종균의 보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칙 제39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品种으로 등록된 버섯종균을 품종등록일부터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69. 1. 1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2.)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 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요령(산림청예규 제33호, 1990.7.14.)은 이를 폐지한다.

③(버섯종균의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요령에 의하여 등록된 버섯종균품종은 부칙 제2항의 폐지예규에 불구하고 품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4. 8. 12.)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형목지정기준

○ 침엽수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②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③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않는다. ④ ha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②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않는다. ④ ha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층 임관에 속할 것. ②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직경 20%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③ 생장이 왕성할 것. ④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⑤ 밀가지들이 많아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⑥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⑦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⑧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30~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이상, 수고 5%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② 생장이 왕성할 것. ③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④ 밀가지들이 많아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⑤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⑥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⑦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활엽수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②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③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않는다. ④ ha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②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않는다. ④ ha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층 임관에 속할 것. ②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 직경 20%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③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④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⑤ 지하고가 높은 것. ⑥ 자연 낙지성이 큰 것. ⑦ 가지가 가는 것. ⑧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⑨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이상, 수고가 5%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②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③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④ 지하고가 높은 것. ⑤ 자연 낙지성이 큰 것. ⑥ 가지가 가는 것. ⑦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⑧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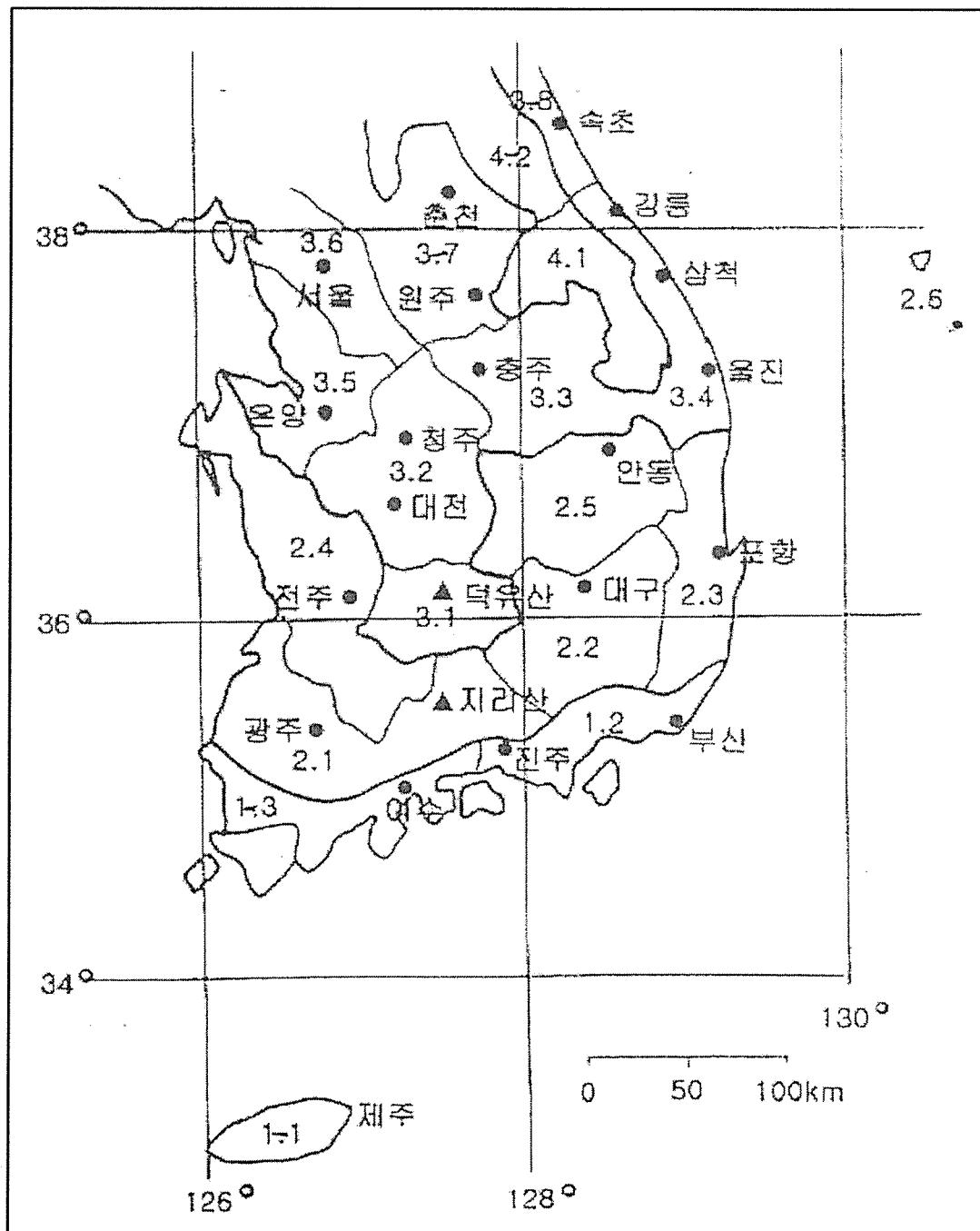
[별표 2]

종자산지구역 목록

산지 번호	산지구역	산지구역 위치
1-1	제주도	제주도 전역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형성
1-2	남부 해안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장흥(장흥, 안양, 부산면), 고흥, 여수, 남해, 사천(사천, 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제외), 통영, 고성, 거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부산, 울산(온산, 서생면)
1-3	서부 해안 및 내륙	신안, 목포, 무안,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영암, 장흥(안양, 장흥, 부산면 제외), 보성(복내, 문덕면 제외), 순천(승주, 주안, 서, 의서, 송광, 황전, 월등면 제외), 광양(다압면 제외), 하동(하동, 적량, 횡천, 악양, 청암면 제외), 사천(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진주(이반성, 일반성면), 함안(여항, 칠원면)
2-1	서남부 해안	영광, 힘평,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제외), 화순, 광주, 장성, 담양, 곡성, 남원, 순창, 고창, 정읍, 부안, 김제, 보성(복내, 문덕면), 순천(서, 의서, 송광, 황전, 월등, 주암면), 광양(다압면), 구례, 하동(하동, 적량, 횡천, 악양, 청암면), 산청, 진주(일반성, 이반성면 제외),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제외)
2-2	동남부 내륙	함안(여항, 일월면 제외), 창녕, 밀양, 의령, 합천(가야, 묘산, 야로면 제외), 고령, 청도, 경산, 대구, 영천, 성주(가천, 금수면 제외)
2-3	동부 해안	양산, 울산(온산, 서생면 제외), 경주, 포항, 영덕, 영양(입암, 석보면)
2-4	서북부 해안	임실(관촌, 성수, 신평, 신덕면 제외),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논산, 서천, 부여, 보령, 청양(정산, 목면 제외), 홍성, 태안, 서산
2-5	동북부 내륙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제외), 구미, 칠곡, 군위, 의성, 청송, 안동(도산, 복후, 녹천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제외), 문경(접촌, 산양, 호계면)
2-6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군
3-1	서남부 내륙	임실(신평, 신덕, 관촌, 성수면), 장수,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거창, 합천(가야, 묘천, 야로면), 성주(가천, 금수면), 진안, 무주,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3-2	중서부 내륙	금산, 영동, 옥천,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대전, 청양(정산, 목면), 공주, 연기, 청주, 보은, 괴산, 진천, 음성
3-3	중북부 내륙	문경(접촌, 산양, 호계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제외), 안동(도산, 복후, 녹천면), 영주,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제외), 충주, 제천, 단양,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제외), 정선(남, 신동, 정선읍)
3-4	동남부 해안	영양(입암, 석보면 제외), 울진,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제외), 동해,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제외)
3-5	서남부 해안	예산, 아산, 천안, 당진, 평택, 안성
3-6	서북부 해안	오산, 용인, 이천, 화성, 수원, 광주, 안산, 시흥,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성남, 하남, 부천, 광명, 인천, 서울, 남양주, 구리, 의정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3-7	서북부 내륙	원주, 여주, 양평,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제외), 홍천(내면 제외), 춘천, 가평(복면 제외), 동두천, 포천(일동, 이동면 제외), 화천(사내, 상서면 제외), 연천, 철원(갈말, 서, 균남면 제외)
3-8	동북부 해안	양양, 속초, 고성
4-1	태백산 지역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태백,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정선(남, 신동, 정선읍 제외),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평창,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4-2	북부산악 지역	홍천(내면), 인제, 화천(사내, 상서면), 양구, 가평(북면), 포천(일동, 이동면), 철원(갈말, 서, 균남면)

[별표 3]

종자산지구역도



[별표 4]

종자품질기준

수종	발아율	효율	수종	발아율	효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가래나무	62	61	독일가문비	90	80
가문비나무	58	44	동백나무	63	60
가중나무	63	56	들메나무	44	41
갈매나무	56	50	때죽나무	81	78
갈참나무	72	57	떡갈나무	78	60
장송	93	87	리기다소나무	85	77
개나리	20	17	리기테다소나무	94	85
개물푸레나무	52	48	만주해송	88	83
개박달나무	12	6	말채나무	51	50
개벚나무	62	61	무궁화	85	77
개오동나무	30	25	물槛나무	34	22
거제수나무	35	26	물오리나무	29	17
계수나무	38	34	물참나무	71	61
고로쇠나무	26	21	물푸레나무	47	44
광나무	66	64	박달나무	21	15
괴불나무	68	63	박태기나무	62	57
구상나무	26	22	밤나무	61	58
굴참나무	57	43	방크스소나무	67	56
까마귀밥여름	54	51	백당나무	65	64
까치박달나무	35	34	버지니아소나무	90	80
낙엽송	40	36	벗나무	98	62
낙우송	11	8	벽오동나무	66	64
난티나무	19	16	복자기나무	26	25
난티암개암나무	49	43	복장나무	48	38
노간주나무	48	36	분비나무	32	26
노린재나무	37	35	붉나무	76	73
누리장나무	47	45	붉가시나무	65	63
눈측백	44	34	비수리	66	63
느릅나무	36	30	비술나무	37	31
느티나무	61	58	비자나무	61	60
다릅나무	69	59	뾰족잎오리나무	25	18
달피나무	32	28	사방오리나무	61	21
당단풍나무	42	36	사스레나무	50	33

수종	발아율	효율	수종	발아율	효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사철나무	17	15	졸참나무	76	58
산수유	84	81	좀잎산오리나무	26	23
산겨릅나무	60	53	종비나무	75	64
산딸나무	50	49	주목	55	53
산사나무	32	29	주엽나무	71	63
산오리나무	59	29	중국굴피나무	46	42
산초나무	60	87	쥐똥나무	62	48
살구나무	98	80	쪽동백	58	57
삼나무	35	28	쪽제비싸리	66	63
상수리나무	57	51	찔레꽃	57	51
생강나무	88	86	찰피나무	15	14
생달나무	55	51	참싸리나무	51	45
서어나무	16	15	참죽나무	62	41
소나무	87	82	측백나무	84	81
수수꽃다리	65	41	충충나무	49	47
쉬나무	65	58	칡	48	46
스트로브잣나무	56	52	테다소나무	95	90
신갈나무	52	40	튜립나무	9	7
싸리나무	52	48	활배나무	54	34
아까시나무	64	58	팽나무	61	57
야광나무	65	53	편백나무	23	21
약밤나무	63	62	푸조나무	60	56
염주나무	5	5	풀싸리나무	31	26
오갈피나무	90	47	풍개나무	54	52
오동나무	73	60	피해나무	9	8
옻나무	38	37	향나무	92	88
은행나무	67	66	향개나무	29	27
음나무	8	6	헛개나무	32	30
이팝나무	68	66	호두나무	66	65
일본목련	67	65	화백나무	31	23
잎갈나무	49	42	화살나무	76	68
자귀나무	56	57	황벽나무	65	60
자작나무	39	22	회양목	48	46
잣나무	74	69	회화나무	54	46
전나무	25	23			

양묘사업기준일람표

五五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염기	보비	살균제		살충제		진		세끼		발		철사		못		파종량		생육기준		특묘				
						(토양)	(일반)	(토양)	(일반)	일부용	포장용	일부용	포장용	밀목	밀목	밀목	밀목	밀목	밀목									
기문비나무	1-0	30	70	15	5	gr/m ³	kg/m ³	m/m ³	gr/m ³	kg/m ³	gr/m ³	kg/m ³	gr/m ³	kg/m ³														
	2-0	20	23	15	-	-	"3.75(3)	5(1)	-	0.04(3)	0.6	-	4	2.2	-	1.2	0.33	0.7	2	25.7	800	700	700	700	700	700		
	3-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700	560	560	560	560	560
	3-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560	450	450	450	450	450
	3-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3-3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3-4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3-5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3-6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3-7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81	57	57	57	57	57
감나무	접목	30	70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36	30	30	30	30	30
	송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36	30	30	30	30	30
	송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36	30	30	30	30	30
	송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36	30	30	30	30	30
	송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36	30	30	30	30	30
강거재수	수	30	70	15	-	-	"3.75(1)	-	-	0.04(3)	0.6	3.75	-	-	2.2	10	-	-	-	-	-	-	26.6	600	600	600	600	600
	수	30	70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90	72	72	72	72	72
	수	30	70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90	72	72	72	72	72
	수	30	70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90	72	72	72	72	72
	수	30	70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90	72	72	72	72	72
굴참나무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19.4	150	150	150	150	15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19.4	150	150	150	150	15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19.4	150	150	150	150	15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19.4	150	150	150	150	15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19.4	150	150	150	150	150
낙타나무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772.9	90	90	90	90	9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772.9	90	90	90	90	9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772.9	90	90	90	90	9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772.9	90	90	90	90	9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772.9	90	90	90	90	90
이식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이식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나무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2.2	10	-	-	-	-	-	-	20.1	600	600	600	600	600

수종별 구분	구분	요소	과석	엽기	퇴비	실근체		살충제		전착제		조		세기		철사		못		파종량		생장준		독묘		
						(도양) 다자 가전	(일반) 유산동 생식회	(도양) 지오 렉스	(일반) 디 터렉스	gr/m ²	kg/m ²	gr/m ²	kg/m ²	gr/m ²	kg/m ²	m/분	kg/m ²	m/분	kg/m ²	m/분	kg/m ²	m/분	kg/m ²	m/분	kg/m ²	m/분
대나무	평근	6	7	-	-	5(1)	-	-	0.04(4)	-	0.3분	20kg/ 100분	-	1m/분	-	-	-	-	-	-	-	-	-	8	6	
대추나무	분열	30	70	15	-	"3.75(4)	5(1)	-	0.04(4)	0.6	3.75	-	4	2.2	-	1.2	0.33	0.7	2	20.0	600	480	-	10	8	
독일가문비	파종	30	70	15	5	3(1)	43.75(3)	5(1)	-	0.04(1)	-	3.75	-	-	10	-	-	-	-	-	-	-	-	480	400	
	2-0	20	23	15	-	"3.75(1)	-	-	0.04(1)	-	0.04(1)	-	3.75	-	-	10	-	-	-	-	-	-	-	-	-	
	2-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	
	2-2	20	23	15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	-	-	81	
	2-3	20	23	15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	-	-	81	
	2-2-2	20	23	15	-	"3.75(1)	-	-	0.04(1)	-	0.04(1)	-	-	-	-	3.4	-	-	-	-	-	-	-	-	-	
들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	0.04(1)	0.6	3.75	-	-	2.2	10	-	-	-	-	-	-	-	-	20.6	90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16	11.2
루브라침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	2.2	10	-	-	-	-	-	-	-	-	500	90
리카나초나무	파종(유)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	2.2	10	-	-	-	-	-	-	-	-	20.8	600
	이식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500	90
물槛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	2.2	10	-	-	-	-	-	-	-	-	30.4	100
물푸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22.8	90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	64
박달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	2.2	10	-	-	-	-	-	-	-	-	8.9	100
버찌나초나무	파종	30	70	15	-	-	"3.75(3)	5(1)	-	0.04(3)	0.6	3.75	-	-	2.2	10	-	-	-	-	-	-	-	-	20.0	600
	1-1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	-	-	-	90
																									77	

수종별	구분	요소	과식	엽기	퇴비	살균제		살충제		접목자제		세제		밀도	파종량	생립기준 밀 이식반수	득묘 본수				
						(도양) 다찌 가변	gr/m ²	kg/m ²	cc/m ³	gr/m ³	(일반) 유산동 생식회	kg/m ³	gr/m ³	kg/m ³	gr/m ³	m/톤	gr/m ³	kg/m ³			
밤나무	개첩목	50	230	30	-	-	43.75(5)	-	-	0.04(5)	20	0.2	-	3.75	20kg/ 100톤	-	10	0.4	-	2	-
	고첩목	50	230	30	-	-	"3.75(5)	-	-	0.04(5)	20	0.2	-	3.75	"	-	10	0.4	-	2	-
	처첩목(1-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1kg/ 100톤	-	-	-	-	-	-
	고첩목(1-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	-	-	
분비나무	고첩목(1-1)	30	70	15	3	-	"3.75(1)	5(1)	-	0.04(1)	-	-	-	-	-	-	-	-	-	-	-
	1-0	30	70	15	5	3(1)	"3.75(3)	5(1)	-	0.04(3)	-	0.6	-	4	2.2	-	1.2	0.33	0.7	2	105.3
	2-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3-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비파나무	3-1	30	70	15	5	-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3-2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3-3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3-4	20	23	15	-	-	"3.75(1)	-	-	0.04(1)	-	-	-	-	3.75	-	10	-	-	-	-
사스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2)	5(1)	-	0.04(1)	0.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사방외나무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산수유나무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산오리나무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	-	-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	10	-	-	-	-
살구나무	1	50	230	30	-	-	"3.75(1)	-	-	0.04(1)	0.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대목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3.75	1kg/ 100톤	-	10	0.4	-	2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염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전처리		포장용		포장용		세기		포장		철사		못		폐종방		생활기준		득묘			
					(도량) (단위) 가량	(일반) 유산동 생식회	(일반) 지오 렉스	(일반) 디 페 리엑스	kg/m ³	gr/m ³	kg/m ³	gr/m ³	kg/m ³	gr/m ³	m/m ³	m/m ³	kg/m ³	gr/m ³	m/m ³	kg/m ³	gr/m ³	m/m ³	kg/m ³	gr/m ³	m/m ³	kg/m ³	gr/m ³	본수		
상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1)	5(1)	-	0.04(11)	0.6	3.75	-	2.2	10	1.2	0.33	0.7	2	23.3	500	400	400	400	400					
	이식	30	70	15	2	-	"3.75(10)	5(1)	-	0.04(10)	-	3.75	-	-	10	-	-	-	-	-	-	64	46	46	46	46				
상수리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479.2	50	40	40	40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50	40	40	40	40				
수원포플러	C1/1	30	138	30	15	5	3(1)	"3.75(3)	5(1)	-	0.16(4)	0.04(1)	-	3.75	-	-	10	-	-	-	-	-	16	8	8	8	8			
	스트로보넷나무	파종	30	70	15	2	-	"1.2(1)	5(1)	-	0.04(3)	0.6	-	4	2.2	-	1.2	0.33	0.7	2	20.0	480	380	380	380	380				
1-1	파종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4	2.2	-	1.2	0.33	0.7	2	20.0	480	380	380	380	380			
	1-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	120	92	92	92	92			
신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3)	-	3.75	-	-	10	-	-	-	-	-	-	-	90	72	72	72	72			
	아까시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3)	-	3.75	-	-	10	-	-	-	-	-	-	-	406.4	64	51	51	51		
양황철나무	C1/1	30	138	30	15	2	3(1)	"3.75(1)	5(1)	-	0.04(3)	-	3.75	-	-	10	-	-	-	-	-	-	-	21.6	80	64	64	64		
	오동나무	분자	30	70	17	4	-	"3.75(2)	5(1)	-	0.04(2)	-	3.75	-	-	10	-	-	-	-	-	-	-	-	12	8	8	8	8	
옻나무(옻나무)	파종	30	70	17	4	-	"3.75(12)	5(1)	-	0.04(12)	-	3.75	-	-	10	-	-	-	-	-	-	-	-	-	6	4	4	4	4	
	유동나무	유종	30	70	15	1	3(1)	-	5(1)	-	-	3.75	-	-	10	-	-	-	-	-	-	-	-	-	-	106.5	32	25	25	25
은행나무	거친 (5년)	-	-	-	-	-	"3.75(2)	-	-	0.04(2)	-	3.75	-	-	10	-	-	-	-	-	-	-	-	-	-	20	20	20	20	20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염기	화비	실 군 재		실 총 재		전체		일복용	포장용	방한용	포장용	세 키		철사	못	화중량	생법기준	특묘	본수
						(도양) 다재 가현	(일반) 유산동 생석회	gr/m ³	kg/m ³	gr/m ³	kg/m ³					m/㎥	m/㎥						
음 나 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	9.1	81	65	
이티리포프라	C1/1	30	138	30	25	-	각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	-	12	8	
자자나무	C1/2	20	46	10	25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	-	8	5	
갓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3)	0.6	3.75	-	2.2	10	-	-	-	-	4.2	81	65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64	51	
	파종	30	70	15	5	3(1)	"3.75(3)	5(1)	-	0.04(3)	0.6	-	4	2.2	-	1.2	0.33	0.7	2	334.2	400	320	
	2-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120	84	
거제 ②	파종 ③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320	128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200	160	
2-2-3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	-	12.8	
전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	4	2.2	-	1.2	0.33	0.7	2	420.3	800	700	
	2-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	96	
	3-0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	12.8	
	2-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10	-	-	-	-	-	-	560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450	
	2-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81	
종인산오자나무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	57	
	2-3-3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	84	
죽나무(침나무)	파종	10	70	15	1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	-	-	80	
태다소나무	1-0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10	-	-	-	-	-	-	160	
																				30.0	200		

수증별	구분	요소	과석	염기	회비	(토양) 다져 가련	(일반) 유산동 생식회	살균제		살충제		질		세기		밀도		발사		못		회중량		상체준 및 이식분수		득묘 본수		
								gr/m ³	kg/m ³	m/m ³	kg/m ³																	
표	백	화종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3.75	-	2.2	10	1.2	0.33	0.7	2	35.8	550	450					
	이식	30	70	15	3	-	"3.75(4)	5(1)	-	0.04(4)	-	3.75	-	-	-	10	-	-	-	-	-	-	64	45				
	1-1-1	30	70	15	3	-	"3.75(2)	5(1)	-	0.04(2)	-	3.75	-	-	-	10	-	-	-	-	-	-	49	45				
	1-2-2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	-	16	12.8				
표나무	화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	-	-	191.0	64	51				
	화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10	-	-	-	-	-	-	32.1	600	540				
	화송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2.2	10	-	-	-	-	-	-	-	90	72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2.2	10	-	-	-	-	-	-	-	16	8				
현사시나무	C1/1	30	138	30	25	25	25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	-	-	-	6	5		
	C1/2	10	46	10	10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	-	-	-	-	-	36	29		
	화종	30	70	15	6	3(1)	"3.75(4)	5(1)	-	0.04(4)	-	3.75	-	-	-	10	-	-	-	-	-	-	-	-	6	5		
	접목	50	230	-	-	"3.75(4)	-	-	0.04(4)	-	3.75	-	-	10	0.4	-	2	2	-	-	-	-	-	16	4			
호두나무 (가래나무)	화종	30	70	15	2	3(1)	각3.75(5)	5(1)	-	0.04(5)	0.6	3.75	-	2.2	10	1.2	0.33	0.7	2	23.8	600	480						
	이식	30	70	15	3	-	"3.75(4)	5(1)	-	0.04(4)	-	3.75	-	-	10	-	-	-	-	-	-	-	64	45				
체	백																											

[별표 6]

양묘사업공정일람표

수종별	구분	1일 공정										배수로 수령	일부 시설	일부 제거			
		경운	정지	조상	과종	이식	접설목	시비	약재 살포	제초	솎음						
		m ³ /3일	m ³	m ³ /1일	m ³	m ³ /3일/일	m ³	m ³									
가문비나무 (독일가문비)	폐종	12,080	300	50	30	-	-	300	n	60	30	-	10,000	600	1,400	130	210
가문비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n	100	-	-	10,000	600	1,400	-	-
가문비나무	거치	-	-	-	-	-	-	500	n	100	-	-	20,000	600	1,400	-	-
가문비나무	대목	12,080	500	80	100	-	-	300	n	100	-	400	20,000	600	1,400	-	-
가문비나무	접목	200	-	-	-	-	접400본	300	n	100	-	400	10,000	600	1,400	-	-
장 속	폐종	12,080	500	50	40	-	-	300	n	60	30	-	10,000	600	1,400	-	-
장 속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n	100	-	-	20,000	600	1,400	-	-
장 속	폐종	12,080	500	40	30	-	-	300	n	60	20	-	20,000	600	1,400	-	-
장 속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n	100	-	-	20,000	600	1,400	-	-
거체수	폐종	12,080	500	50	50	-	-	300	n	60	-	-	20,000	600	1,400	-	-
거체수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n	60	30	-	10,000	600	1,400	-	-
거체수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n	100	-	-	10,000	600	1,400	-	-
굴착나무송	폐종	12,080	500	80	50	-	-	300	n	60	20	-	20,000	600	1,400	-	-
굴착나무송	이식	12,080	300	40	30	-	-	300	n	60	30	-	10,000	600	1,400	-	210
굴착나무송	폐종	12,080	300	80	-	15	-	300	n	100	-	-	10,000	600	1,400	-	-
굴착나무송	이식	12,080	300	80	-	15	-	300	n	100	-	-	10,000	600	1,400	-	-
느티나무	폐종	12,080	500	80	50	-	-	300	n	60	20	-	20,000	600	1,400	-	-
느티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n	100	-	-	20,000	600	1,400	-	-
느티나무	폐종	12,080	500	100	-	-	-	400	n	100	-	-	400	20,000	600	1,400	-
대나무나무	폐종	12,080	500	80	50	-	-	300	n	60	30	-	20,000	600	1,400	-	-
대나무나무	이식	12,080	400	100	-	-	-	400	n	100	-	-	20,000	600	1,400	-	-
대나무나무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n	100	-	-	20,000	600	1,400	-	-
루브라침나무 리가소나무류	폐종	12,080	500	50	40	-	-	300	n	60	30	-	10,000	600	1,400	-	-
루브라침나무 리가소나무류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n	100	-	-	20,000	600	1,400	-	-
루브라침나무 리가소나무류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n	60	30	-	20,000	600	1,400	-	-
물푸레나무	폐종	12,080	500	80	50	-	-	300	n	60	20	-	20,000	600	1,400	-	-
물푸레나무	이식	12,080	500	40	30	-	-	300	n	60	20	-	20,000	600	1,400	-	-

수종별	구분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삽목	시비	약체 살포	제초	숙음	질순 띠기	감독	관수	배수로 수리	일부 시설	일부 제거	m'
밥나무	자접내목 자접목 고접내목 (1-0)	12,080	500	80	50	-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밥나무	1-1	12,080	500	80	50	-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벼자나무	고접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5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벼자나무	파종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5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비파나무	파종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비파나무	사스레나무	12,080	500	80	5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살구나무	대목 접목	12,080	500	80	50	-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살구나무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400	10,000	600	1,400	130	210
삼나무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상수리나무	파종 이식	12,080	500	80	50	-	-	300	"	60	60	-	20,000	600	1,400	-	-	-
수원포풀리	C1/2	12,080	500	100	-	-	900분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스트로보잣나무	파종 이식	12,080	500	50	30	-	-	300	"	500	40	-	10,000	600	1,400	130	210	-
신갈나무	거치	12,080	500	80	-	-	15	-	-	100	-	-	10,000	600	1,400	-	-	-
신갈나무	파종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500	100	-	20,000	600	1,400	-	-	-
양황철나무	C1/2	12,080	500	100	-	-	900분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수종별	구분	경운	정지	조상	파총	이식	접습목	시비	약체 설포	제초	숙음	결순 띠기	감독	관수	배수로 수리	m ³ /3인1일	m ³	일부 시설	일부 제거
오동나무	분근, 실생	12,080	500	80	-	50	-	300	"	200	-	-	20,000	600	1,400	-	-	-	
오리나무	파종	12,080	3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율동나무	파종	12,080	500	50	50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이태리포푸라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자작나무	C1/2	12,080	500	100	-	-	900본	600	200	-	500	500	30,000	600	1,400	-	-	-	
잣나무	C1/2	12,080	500	100	-	-	400"	600	200	-	500	500	30,000	600	1,400	-	-	-	
전나무	이식	12,080	500	40	30	-	-	300	"	100	20	-	20,000	600	1,400	-	-	-	
죽(비짜리), 침자리	파종	12,080	500	50	30	-	15	-	300	"	60	40	-	10,000	600	1,400	-	210	
편	파종	12,080	500	80	-	-	-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잣나무	거치	-	-	-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전나무	파종	12,080	300	50	30	-	-	-	300	"	60	40	-	20,000	600	1,400	-	210	
잣나무	이식	12,080	500	80	-	15	-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잣나무	거치	-	-	-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편	파종	12,080	300	40	30	-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210	
잣나무	거치	-	-	-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잣나무	파종	12,080	500	80	-	15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잣나무	이식	12,080	300	40	30	-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현사	C1/2	12,080	500	100	-	-	900"	600	200	-	500	500	30,000	600	1,400	-	-	-	
현사	C1/2	12,080	500	100	-	-	400"	600	200	-	500	500	30,000	600	1,400	-	-	-	
호두나무(가래)	파종	12,080	300	40	30	-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210	
호두나무(가래)	파종	12,080	300	80	-	15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현사	이식	12,080	300	8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수증별	구분	1인1일공정			시비	사업회			제초	숙음	관수	배수리수	결순
		굴취	선묘	결속식분		근표	토양살균	토양살충					
기문비나무 (독일기문비, 기문비나무, 분비나무)	파종식 이거목	-	5,000 (200회)	10	2	2	1	3	-	7	1	2	-
감나무	파송	30	3,500	10	-	2	1	1	-	6	-	4	2
강	거제수 굴참나무 낙엽송	30	1,000	10	-	2	1	1	-	6	-	7	2
	느티나무	30	4,000	10	2	2	1	1	-	6	-	2	-
	대나무 대추나무 들매나무 루브라참나무	400	-	5,000본	100	1,000	2	4	-	6	-	2	-
	리기다소나무류 (테에다) 풀풀해나무	10	7,000	15	2	1	1	1	-	1	-	2	-
	박달나무	30	4,000	10	2	2	2	2	-	1	-	4	-

수 중 별	구분	1 일 1 일 공 정			사 업 회 수			결승 여기		
		글 쥐	선 모	포 장	시 비	토양살균	약 제	체 초	관 수	배수로 수 리
밥 나 무	저첩대목 저첩목 고첩대목 1-0	-	-	2	2	1	1	-	6	2
	30	300	10	-	2	-	-	6	-	2
	30	2,000	-	2	1	1	-	6	-	2
	-	-	2	2	-	1	-	6	-	2
	30	300	10	-	1	-	5	-	7	2
버지나이소나무	고 접 종 이 식 종 파 종 파 대 접 목 비 파 나 무 사 스 레 나 무 설 구 나 무	20	7,000	15	2	1	1	3	7	2
	30	4,000	10	2	2	-	1	-	6	-
	30	5,000	10	2	2	1	1	-	6	-
	30	4,000	10	2	2	1	1	-	6	-
	-	-	-	2	2	1	1	-	6	-
삼 나 무	폐종 이식 파 종 이 식 C1/1 파 종 이 식 거 치 파 종 파 종 C1/1	30	300	10	-	1	-	1	-	2
상수리나무	폐종 이식 파 종 C1/1 파 종 이 식 거 치 파 종 파 종 C1/1	20	7,000	15	2	2	1	1	-	2
수원포풀리	800	800	2	2	-	1	1	3	-	2
스트로보넷나무	-	5,000 (2-0포함)	10	2	2	-	1	1	-	2
신갈나무	20	3,500	10	-	2	2	1	1	-	4
아까나무	30	4,000	10	2	2	1	1	1	1	2
양형철나무	20본	4,000	10	2	2	1	1	1	1	2
		800	800	2	2	1	1	1	1	2

[별표 7]

조림용묘목규격표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가래나무	1-0	15	cm이상	mm이상	cm이상
가문비나무	3-1	22	7.0	20	
	3-2	28	7.5	23	
가종나무	1-0	21	3.0		
	1-1	42	8.3	25	
갈참나무	1-1	30	6.0		
감나무	접목1	45	8.0	20	
소나무	1-1	16	5.0	18	
거제수나무	1-0	22	2.5		
	1-1	40	5.0	25	
고로쇠나무	1-0	32	3.9		
	1-1	62	5.0		
구상나무	1-0	4	1.4		
	2-0	6	2.0		
	2-2	18	5.0		
	2-3	22	7.0		
굴참나무	1-0	25	4.0	23	
	1-1	38	6.0	25	
낙엽송	1-0	25	3.5	18	
	1-1	35	6.0	20	
난티나무	1-0	20	2.5		
	1-1	94	6.5		
노각나무	1-1	42	5.9		
	1-1-1	58	9.0		
느릅나무	1-0	23	3.0		
		120	8.0		
느티나무	1-0	42	3.5	25	
	1-1	90	7.0	27	
다릅나무	1-0	16	3.0		
단풍나무	1-0	11	2.5		
당단풍	1-0	11	2.5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독일가문비		cm이상	mm이상	cm이상	
	2-2	35	8.0	18	
	2-3	55	10.0	20	
	2-2-2	60~79 80이상	10.2 10.3	24 30	○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두릅나무	1-1	50	6.8		
두충나무	1-0	40	6.0	20	
	1-1	51	5.1		
들메나무	1-0	12	2.5		
	1-1	30	5.0	20	
	1-1-1	40	7.0		
루브라참나무	1-0	25	5.2	20	
	1-1	30	5.5	30	
리기다소나무	1-0	15	4.0	15	
	1-1	25	6.0	18	
	1-0	15	3.0	15	
리기테다소나무	1-1	30	5.0	20	
	1-0	15			
마가목	1-0	22	3.2		
물掴나무	1-0	18	5.0		
물오리나무	1-0	18	5.0		
물푸레나무	1-0	25	6.0	20	
	1-1	41	7.4	26	
박달나무	1-0	23	4.0	30	
밤나무	대목1-0	70	8.0	20	
	대목1-1	120	8.0(지상30cm)	25	○ 간장 : 접합부로 부터의 길이
	저접1	50	8.0	20	○ 근원경 : 접수의 직경
	고접1	50	10.0	25	○ 접합부의 유합이 완전한 것
	유접1	45	6.0	15	○ 묘간부가 절단되지 않은 것
백합나무	1-0	31	8.2		
	1-1	48	9.3		
버지니아소나무	1-0	8	1.5		
	1-1	25	4.0	20	
복자기	1-1	24	4.5		
분비나무	3-1	18	5.0	18	
	3-2	22	7.0	20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사방오리나무	1-0	18	5.0		
사스레나무	1-0	11	2.5		
	1-1	35	5.0	25	
산딸나무	1-0	35	3.6		
	1-1	44	5.5		
산벚나무	1-0	28	3.5		
살구나무	접1	50	6.0	25	
삼나무	1-1	27	5.5	18	
	1-1-1	35	7.5	20	
상수리나무	1-0	28	5.0	23	
	1-1	39	7.0		
	용기묘	25	2.7		잠정
세로티나벚나무	1-0	26	2.5		
수원포풀리	C1/1	180	11.0	20	
스트로브잣나무	1-0	4	0.8		
	1-1	7	2.0		
	1-2	23	6.0	20	
	2-0	9	2.0	17	
	2-1	33	7.5		
신갈나무	1-0	26	3.5	23	
아까시나무	1-0	35	5.0		근류균괴가 부착되어야 함
	1-1	80	7.0	20	
양황철나무	C1/1	210	12.0	20	
오동나무	분근1	70	20.0	25	
	실생1	50	15.0	20	
	치상묘	-	6.0	20	
오리나무	1-0	18	5.0	18	오리나무류는 근류균괴가 부착되어야 함
옻나무	1-0	18	4.6		
	1-1	50	7.0		
은행나무	1-0	10	3.6		
	1-1	18	5.2		
	2-0	30	7.0	15	
음나무	1-0	20	3.5	20	
이태리포풀리	C1/1	220	10.0	20	근원경 50cm의 직경
	C1/2	300	18.0	30	
자작나무	1-0	40	5.0	25	
	1-1	67	5.2	25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잣나무	2-0	cm이상	mm이상	cm이상	o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3-0	13	3.5	15	
	2-1	18	5.0	15	
	2-2	16	4.5	15	
	2-3	22	6.0	18	
	2-2-3	32	8.0	20	
		60~79	10.4	28	
		80이상	10.6	34	
	1-0	4.0	1.4		
	2-0	6.0	2.0		
전나무	2-1	9.0	3.7		o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2-2	18	5.0	18	
	2-3	22	7.0	20	
	2-2-3	60~79	10.6	32	
		80이상	10.8	38	
	1-1	35	6.4		
	1-0	18	5.0		
	1-2	10	2.4		
	2-1	16	3.5		
	3-2	37	6.0		
쪽제비싸리, 참싸리	1-0	30	4.0	15	
참중나무	1-1	42	7.1		
칠엽수	1-0	22	7.0		
테다소나무	1-0	20	4.0	15	
편백	1-1	27	6.0		
	1-1	27	4.5	18	o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1-1-1	35	7.0	20	
	1-2-2	70~89	10.2	28	
		90이상	10.3	34	
피나무	1-0	25	7.0	25	
해송	1-1	16	6.0	18	
현사시나무	C1/1	150	10.0	20	
	C1/2	180	15.0	25	
호두나무	1-0	15	8.0	20	
	접1	15	8.0	20	
화백	1-0	6	1.0		
	1-1	27	4.5	18	
	1-1	82	6.1		
황벽나무	C1/1	210	12.0		

[별표 8]

곤포당 및 속당묘 목본수표

수종	묘령	곤포당		속당본수	비고
		본수	속수		
감나무	접목묘	200	10	20	
강송	2	1,000	50	20	
거제수	1	1,500	75	20	
낙엽송	2	500	25	20	
느티나무	1	1,500	75	20	
대추나무	분열묘	100	10	10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4	500	25	20	
들메나무	1	1,000	50	20	
루브라참나무	1	1,000	50	20	
리기다소나무	2	1,000	50	20	
	1(성)	2,000	100	20	
리기테다소나무	2	800	40	20	
	1(성)	1,500	75	20	
물푸레나무	1	1,000	50	20	
박달나무	1	1,500	75	20	
밤나무	저접, 고접	100	10	20	
버지니아소나무	2	1,000	50	20	
분비나무	5	400	20	20	
사스레나무	1	1,500	75	20	
살구나무	접목묘	200	10	20	
	유묘	10,000	100	100	
삼나무	2	1,000	50	20	
상수리, 굴참, 신갈	1	1,000	50	20	

수종	묘령	곤포당		속당본수	비고
		본수	속수		
스트로브잣나무	3	1,000	50	20	
	4	500	25	20	
아까시	1	1,000	50	20	
음나무	1	1,500	75	20	
오동나무	분근, 실생	50	5	10	
오리나무류	1	2,000	100	20	
옻나무	1	1,000	50	20	
자작나무	1	1,500	75	20	
잣나무	2	2,000	100	20	
	3	1,000	50	20	
	4	500	25	20	
	4	500	25	20	
전나무	4	500	25	20	
	5	400	20	20	
쪽제비나무, 참싸리	1-0	2,000	100	20	
테다소나무	2	800	40	20	
	1(성)	1,500	75	20	
편백	2	1,000	50	20	
포플러류	C1/1	80	8	10	
	C1/2	50	5	10	
피나무	1	1,500	75	20	
호두나무	1	500	25	20	
해송	접목묘	300	15	20	
	2	1,000	50	20	
화백	2	1,000	50	20	

三부록

[별지 제1호 서식]

채종림·수형복지정현황보고서									
구분	지정 번호	지정 년월일	소유별	지정내용					
				구역 면적	수종	소재지	본수	수령	년
				ha					

(190mm×268mm)

[별지 제2호 서식]

채종원·채수포조성 실적 보고

구 分	수 종	소 재 지	조 성 실 적	
			면 적	본 수
			ha	본

(190mm×268mm)

[별지 제3호 서식]

채종림 등 종자 결실 예찰조사 보고

구 분	수 종	결실흥풍	채취가능량
			kg

(190mm×268mm)

[별지 제4호 서식]

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

구분	소재지	수종	계획량	채취실적	채취기간
			kg	kg	

(190mm×268mm)

부 록

[별지 제5호 서식]

종자산지내역

1. 종자생산원	채종임분 · 채종림 · 채종원
2. 채취장소	(산지번호 : —)
3. 수종명	
4. 수령 (채종원조성년도)	
5. 종자채취일자	
6. 수량	
7. 기타	

20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

(190mm×268mm)

[별지 제6호 서식]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수종	⑤ 검사신청수량 kg	⑥ 채취기간	⑦ 생산지	⑧ 보관장소	⑨ 검사목적
산림법 제47조, 동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종자산지내역 1부(별지 제5호 서식)					수수료
					원

(190mm×268mm)

[별지 제7호 서식(1)]

(1. 표 면)

양묘시업상황보고										
1. 총괄										
①구분	②주체별	③중앙 계획	지정내역			⑦생 산 자 수	생산계획분수			
			④계	⑤중앙 계획분	⑥도자체 계획분		⑧계	⑨중앙 계획분	⑩도자체 계획분	⑪기타
성묘	계									
유묘	계									

[별지 제7호 서식(2)]

(2. 이) 면)

2. 성 · 유묘별, 주체별 :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수종	③ 묘령	④ 중앙계획	지정내역			⑧ 생 산 자 수	생산계획본수			
				⑤ 계	⑥ 중앙 계획	⑦ 도자체 계획		⑨ 계	⑩ 중앙 계획분	⑪ 도자체 계획분	⑫ 기타
계											
경제수											
특용수											
유실수											
사방수											

[별지 제8호 서식]

양묘실태조사보고

(단위 : 천분)

①구 분	②수 종	③묘 령	생 산 가 능 량			
			④ 계	⑤ 중앙계획분	⑥도자체 계획분	⑦기 타
계						
경제수	소계					
특용수	소계					
유실수	소계					
사방수	소계					

(190mm×268mm)

[별지 제9호 서식]

산림용묘목검사예정기일통보서

①수종별	②묘령	③수요처 (조림지)	④수량	⑤검사 예정일시
			본	

산림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1. 표면)

산림용묘목검사야장					판정내용		
						합격여부	최종합격묘본수
① 모집단 번호		② 검사 일자			③ 합·불	천본	
④ 수종			⑤ 묘령			⑥ 수량	속 본
⑦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⑧ 입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⑨ 검사자 성명				소속	~		
검 사 내 역	포 장 전 검 사	⑩ 실제총속수					
		⑪ 시료기준(속) 본수					
	⑫ 실제본수	본	⑬ 수량율	$\frac{⑫}{⑪} \times 100$			
	⑭ 실체본수중 합격본수	본	⑮ 품질율	$\frac{⑭}{⑫} \times 100$			
	포 장 검 사	⑯ 실제총곤포수	곤포				
	⑰ 최종합격본수	본 $(\frac{⑯}{⑮} \times 100) \times (\frac{⑬}{⑮})$					

(190mm×268mm)

(2. 이 면)

[별지 제11호 서식]

산림용묘목재검사통지서				
생 산 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재 선 별 지 시	④ 모집단번호		⑤ 재검사일	20 . . .
	⑥ 수종 및 묘령		⑦ 수량	본
				본
				본
⑧ 사유				
위와 같이 재선별 지시하오니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묘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재선별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 . . .				
산림용 묘목검사원 소속 : 직·성명 : (인)				

(190mm×268mm)